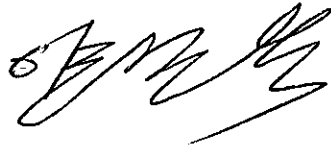


서울 속으로 한발 더!
시민 걸음으로 한뼘 더!

의원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의 장



No. 60

2018. 2.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접수의안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비 고 (발의일)
1 (2395)	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에 인용된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최신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-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에서 이를 삭제함(제1조) -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전에 관내 <u>중소기업</u> 현황 파악을 위하여 <u>실태조사</u> 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제7조)	맹진영 의원 외 9명 (기획경제)	2018. 2.22.
2 (2396)	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현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 입주민까지 포함하는 한편, 공동수도요금,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관리비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,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-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대상을 변경함 (제명 변경) - 공동사용 전기요금·수도요금·공공하수도사용료·물이용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 (안 제7조제1항제1호)	유 용 의원 외 1명 (찬성 25명) (도시계획관리)	2018. 2.22
3 (2397)	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로 위탁 대상 주차장의 범위를 시장 인근 100m이내, 주차면수를 20면 이하로 제한하면서 주차장 관리 운영측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결과와 민원 등을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. - 전통시장인근 “100m이내”를 “200m 이내”로, 주차면수 “20면”을 “25면”으로 변경함 (안 제10조제1항).	김진철 의원 외 12명 (교 통)	2018. 2.22